

【참고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
- 가.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(안 제2조제7호)
- 나.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,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(안 제10조제1항)
- 다.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·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·보존 의무를 면제(안 제12조의2 및 안 제19조의2 신설)
- 라.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,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, 8세 이하 아동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통보 규정 완화(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4항)
- 마.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(안 제29조제1항 단서)
- 바.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(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)

사.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(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)

아.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

(1)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(안 제42조)

(2)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,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(안 제8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)

(3)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(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)